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7

발의연월일: 2020. 9. 23.

발 의 자:박 정·정성호·유동수

윤후덕 · 김철민 · 백혜련

신동근 • 이성만 • 정춘숙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 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법률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읍·면·동지역에서"를 "시·군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	
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6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	
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u>읍·면·동지역에</u>	<u>시·군에서</u>
<u>서</u>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